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

2012. 7.

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ㅇ 작성자 : 김 기 영
- 개정자 : 한 인 수
- o 제·개정경과
 - 1997년 7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1997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2002년 6월 화학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2002년 8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 - 2012년 7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ㅇ 관련규격 및 자료
 - 영국 ICI Standard
- o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 (소화설비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 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7월 18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고열로부터 용기 보호에 관한 기술지침 제1장 일반사항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43 조(소화설비)의 규정에 의거 고열로부터 용기를 보호하여 용기의 폭발을 예방 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1(위험물질의 종류)의 제4호, 제5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고정식 용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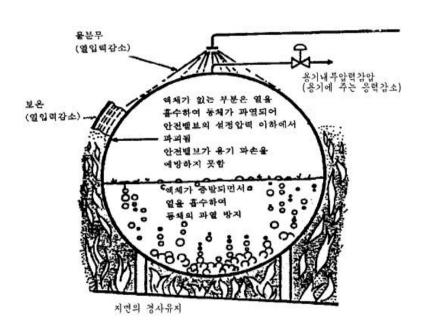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"용기"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(압력용기)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압력용기 및 그 부속 배관설비를 말한다.
- (나) "외부 화재로부터 용기의 보호"라 함은 용기 주위의 화재로 인하여 용기에 열이 전달됨으로서 재질의 응력이 저하되어 용기가 설계압력 이하에서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를 말한다.
- (다) "전열가열용기"라 함은 내부 유체의 온도를 정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 가열선을 외부에 설치한 용기, 전기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장치를 내부에 설치한 용기 또는 전기를 이용한 열교환기 등을 말한다.

- (라) "단열용기"라 함은 취급하는 유체가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고 온으로부터 열을 차단하여 용기의 내부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용기 내부에 단열재를 시공한 용기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외부화재로부터 용기의 보호

4. 용기보호지침

(1) 화재시에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다.



〈그림 1〉 외부 화재로부터 용기 보호 방법

- (가) 지면의 경사유지
- (나) 외부 보온
- (다) 물분무
- (라) 내부 감압
- (2) 용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항(1)호의 방법을 필요에 따라 조합하여 설치한다.

5. 지면의 경사유지

지면의 경사유지 방법은 주로 저장용 용기에 적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- (1) 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면은 누출된 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.
- (2) 지면의 경사도는 1/40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1/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- (3) 방유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내에 집유조를 설치하고 이송설비 또는 자연 배유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.

6. 외부 보온

- (1) 외부 화재시에 용기로의 열전달을 감소시키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온을 실시한다.
- (2) 보온재는 다음과 같은 물질을 주로 사용한다.

- (가) 콘크리트
- (나) 질석(Vermiculite)
- (다) 규산 칼슘(Calcium silicate)
- (라) 퍼얼라이트(Perlite)
- (마) 팽창성 매스틱(Intumescent mastic)
- (3) 저온용 보온재는 화염에 취약하므로 그 외부에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질석 등을 $10\sim20$ mm 두께로 설치한다.
- (4) 외부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수 등의 분사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한다.
- (5) 보온재 설치시에는 용기 외부의 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점검구 등을 설치한다.

7. 물분무

- (1) 용기의 동체가 직접 화염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분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분무 속도는 $10 \ell / m^2 / min$ 이상으로 한다.
- (2) 물분무 설비는 신속히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.
- (3) 물분무는 용기 외부에 골고루 분사되도록 한다.

8. 내부 감압

- (1) 감압 속도는 15분내에 다음 각 호의 수치중 작은 수치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.
- (가) 용기 내부의 압력을 게이지 압으로 785 kPa(8 kg/cm²)로 유지
- (나) 용기 내부의 압력을 설계 압력의 50%로 유지

- (2) 외부에 보온이된 용기의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(1)호에서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.
- (3) 용기가 설치된 지면이 경사진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(1)호에서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.
- (4) 용기가 설치된 지면이 경사지고 그 용기가 보온된 경우에는 60분 이내에 (1)호에서 요구하는 내부 압력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.
- (5) 압력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.

제3장 화재가 아닌 고온으로부터의 용기 보호

9. 전열가열용기

전열가열용기의 경우에는 용기의 내부 온도가 설계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연동설비를 한다.

10. 단열용기

내부에 단열재가 설치된 용기는 단열재의 손상으로 인하여 용기의 동체의 내부표면 온도가 설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 용기를 보호한다.

- (1) 동체 외부에 수냉자켓(Water jacket)의 설치
- (2) 동체 외부에 온도 지시 페인트 도장
- (3) 서모그래피(Thermography)로 주기적 측정